

Meera Joshi

위원의장

Allan J. Fromberg

공보부

frombera@tlc.nyc.gov

Rebecca Harshbarger

공보부

harshbargerR@tlc.nyc.gov

33 Beaver Street
22nd Floor
New York, NY 10004

1년간 신규 FHV 차량 면허 중지 및 WAV 면허 수수료 변경사항

오늘 오후 뉴욕시 Bill de Blasio 시장은 택시 및 임대 차량을 관리하는 지방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 중 두 가지는 오늘부터 발효됨을 유의하십시오.

신규 FHV 차량 면허

오늘 오후 5시부터, TLC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WAV)에만 신규 FHV 차량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1년간 일시중지 조치는 현재 FHV 차량 소유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 FHV 차량 면허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차량을 위해 제출된 기지 확인증(Base Affirmation)상 날짜와 시간에 따라 해당 1년 일시중지 조치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오늘 오후 5시 이전에 제출된 기지 확인증에 대해서는 일반 FHV 차량 면허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량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오늘 오후 5시 정각 또는 그 이후 제출된 기지 확인증에 대해서는 1년간 일시중지 조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의 시행 결과 TLC가 적용할 변경사항에 따라 2018년 8월 23일부터 기지는 신규 FHV Wav 차량 면허를 위한 기지 확인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된 경우,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장기 임대를 하고 해당 운전자가 그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 TLC는 새로운 FHV 면허를 휠체어 탑승 불가 차량에 발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이 예외사항은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며 운전자는 이 예외사항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TLC에 제출해야 합니다. TLC는 다음 주 내 TLC 웹사이트에 운전자를 위한 이러한 예외 절차 내용을 게시할 것입니다.

WAV 면허 수수료 면제

2018년 8월 14일 **오늘 오전 12시부터** 신규 또는 갱신 면허 신청일에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WAV)과 함께 해당 면허가 사용된 경우, 옐로우 택시 및 그린 택시(SHL) 허가증을 가진 FHV 차량을 포함한 FHV 차량에 대한 면허 수수료가 면제될 것입니다. 특히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WAV)이 사용된 경우 다음 수수료가 면제될 것입니다.

- 옐로우 택시: 550달러의 연간 면허 수수료
- FHV: 275달러의 연간 면허 수수료

차량 검사비 및 상업용 자동차세(CMVT)를 포함하여 기타 모든 해당하는 수수료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TLC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 면허 부여 시스템을 현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LARS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갱신하는 FHV WAV 차량 면허 소지자는 계속해서 LARS에서 면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TLC가 해당 금액을 환급해 줄 것입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 WAV 차량 소유자는 LARS에서 면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8월 23일 전에 면허가 종료되지 않는 WAV 차량 소유자는 재신청을 위해 오늘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2018년 8월 14일 오전 12시 이전에 제출된 신규 또는 갱신 WAV 면허 신청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